

2020. 2. 11. 보도 자료

공보관실 02)708-3411 / 팩스 02)766-7757



제 목 : 2월 14일 공개변론 안내

- 헌법재판소는 오는 2. 14.(금) 14:00, 16:00 대심판정에서 아래 사건에 대한 변론을 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 번	사건번호 및 사건명	청구인 (대리인)	피청구인 (대리인)	시 간
1	2019헌라3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 장제원 외 12 (박주현 외 4)	국회의장 외 2 (법무법인(유한) 바른)	14:00
	2019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병합)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 나경원 외 113 (박주현)	국회의장 (법무법인(유한) 바른)	
2	2019헌라5 국회의원과 국회 정치 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 장제원 외 1 (법무법인 가우 외 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 외 1 (법무법인(유한) 주원)	16:00

붙임 : 관련사건 보도자료 2부. 끝

보 도 자 료

국회 신속처리안건 지정 권한쟁의 사건

[2019헌리3, 2019헌리2(병합)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공개 변 론]

헌법재판소는 2020년 2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2019헌리3, 2019헌리2(병합)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변론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① 국회의장이 2019. 4. 25. 당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의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을 오신환, 권은희 의원에서 채이배, 임재훈 의원으로 개선한 행위, ② 2019. 4. 26. 전자입법시스템인 국회 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하여 백혜련 의원 등이 발의한 공수처법안 및 채이배 의원 등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수리한 행위, ③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19. 4. 29. 및 30. 각 회의를 개최하고 각 소관인 공수처법 등 4개 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을 상정하여 표결을 실시, 가결을 선포한 행위, ④ 그리고 이러한 의결에 따라 국회의장이 2019. 4. 30. 각 법안들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한 행위를 대상으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그 심의·표결권의 침해 및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건이다.



2020. 2. 11.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사건개요

- 2019. 4. 22.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각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률안들을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합의안은 4. 23. 각 정당의 의원총회에서 추인되었다.
- 2019. 4. 24.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사개특위 소관 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 의결에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4. 25. 국회의장에게 사개특위의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 중 오신환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개선할 것을 요청하였고, 국회의장은 같은 날 이러한 요청대로 사개특위 위원을 개선하였다.
- 2019. 4. 25.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은, 국회의장의 오신환 의원(2018. 11. 23. 제364회 국회 정기회 회기 중 사개특위 위원 선임)에 대한 개선행위가 제368회 국회 임시회 회기 중(2019. 4. 8.~5. 7.) 중에 있었으므로, 국회법 제48조 제6항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2019 헌라2 사건)**
- 2019. 4. 25.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다시 국회의장에게 사개특위의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 중 권은희 의원(2018. 11. 23. 제364회 국회 정기회 회기 중 사개특위 위원 선임)을 임재훈 의원으로 개선할 것을 요청하였고, 국회의장은 같은 날 이러한 요청대로 사개특위 위원을 개선하였다.
- 2019. 4. 26.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전자입법발의 시스템인 국회 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였고, 같은 날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등도 같은 시스템을 통하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
- 2019. 4. 29.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368회 국회 임시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최하고, 검찰청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위와 같이 제출된 공수처법안 등 4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을 상정하여 표결을 실시, 가결을 선포하였다.
- 2019. 4. 29.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368회 국회 임시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최하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을 상정하였으며, 4. 30. 차수를 변경한 제10차 회의에서 표결을 실시, 가결을 선포하였다.
- 2019. 4. 30. 국회의장은 위와 같은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의 의결에 따라 각 법

를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였다.

- 2019. 5. 9. 자유한국당 소속 사개특위 및 정개특위 위원인 청구인들은 권은희 의원에 대한 사개특위 위원 개선과 위 전자입법발의, 그리고 사개특위 및 정개특위에서의 각 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상 행위들을 대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2019헌라3 사건)
- 헌법재판소는 2020. 1. 30. 2019헌라3 사건에 2019헌라2 사건을 병합하는 결정을 하였다.

▣ 심판대상 및 관련 조항

- 2019헌라2 사건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19. 4. 25.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의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 중 국회의원 오신환을 국회의원 채이배로 개선한 행위가 국회의원 오신환 및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그 행위의 무효 여부

- 2019헌라3 사건

- (1)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19. 4. 25.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의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 중 국회의원 권은희를 국회의원 임재훈으로 개선한 행위가 국회의원 권은희 및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및 그 행위의 무효 여부
- (2)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19. 4. 26. 국회 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20029호)’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20030호)’을 수리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및 그 행위의 무효 여부
- (3) 피청구인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19. 4. 29. 각 위원회를 개최한 행위가 국회의원 오신환, 권은희 및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및 각 행위의 무효 여부
- (4) 피청구인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19. 4. 29. 제368회 국회(임시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최하고,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16500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20029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20030호)',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20037호)'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을 상정하여 표결을 실시, 가결을 선포한 행위가

국회의원 오신환, 권은희 및 청구인들 중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및 그 행위의 무효 여부

- (5) 피청구인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19. 4. 29. 제368회 국회(임시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최하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19985호)'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을 상정하여, 2019. 4. 30. 제368회 국회(임시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표결을 실시, 가결을 선포한 행위가

청구인들 중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및 그 행위의 무효 여부

- (6)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19. 4. 30.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각 의결된 대로 각 법률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및 그 행위의 무효 여부

[관련 조항: 별지 첨부]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오신환, 권은희 의원에 대한 이 사건 개선행위는 위원회 위원을 임시회 회기 중 개선한 것으로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에 위배되고, 해당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로 볼 수 없어 같은 항 단서에도 위배되며, 의회주의 및 위원회제도에 내재된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반하여 국회의원 오신환, 권은희 및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무효이다.
- 전자입법발의시스템에 의한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이 사건 법률안 수리행위는 법률상 근거가 없고, 일반적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안 제출행위는 국회법 제79조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였으며, 먼저 팩스로 제출된 법률안을 철회하지 않고 제출되어 국회법 제90조를 위반하였으므로 무효이다.
- 피청구인 사개특위 및 정개특위 위원장의 각 특위의 개최행위는 간사 간 협의도

없이 회의시간 및 장소 통보도 개최 시간에 임박하게 이루어져 의회주의 및 국회법 제49조 제2항을 위반하였으며, 이로써 각 특별위원회 위원들인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무효이다.

- 사개특위 위원장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 상정 및 가결선포행위는 위와 같이 위법하게 구성된 위원회를 간사 간 협의 없이 개최하고, 무효인 법률안을 상정하였으며, 법안 배포 및 질의·토론도 없이 표결이 실시된 것으로, 청구인들 중 사개특위 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무효이다.
- 정개특위 위원장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 상정 및 가결선포행위는 위와 같이 간사 간 협의 없이 개최하고, 법안 배포 및 질의·토론도 없이 표결이 실시된 것으로, 청구인들 중 정개특위 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무효이다.
- 국회의장의 각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행위는 사개특위 및 정개특위에서 위헌·위법인 절차로 의결된 바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여 무효이다.

▣ 피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오신환, 권은희 의원에 대한 개선행위의 경우,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지위가 변동되지 않고,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 (2019헌라2 사건 청구 및 2019헌라3 사건 중 권은희 의원에 대한 개선행위에 대한 청구 부분)

나아가 이 사건 개선행위는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에서 위원회 위원의 개선을 제한하는 ‘임시회 회기 중 선임된 위원을 동일 회기 중 개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단서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등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개선행위는 청구인들 및 국회의원 오신환, 권은희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국회의장의 국회 입안지원시스템에 의한 이 사건 법률안 수리행위는 입법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아가 헌법 및 국회법은 법률안 제출 방식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전자문서를 이용한 법률안 제출은 전자정부법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들이 먼저 팩스로 제출되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은 접수 미완료로 발의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법률안 수리행위는 위법하지 않다.

- 피청구인 사개특위 위원장은 이 사건 사개특위 개최일시를 정하기 전 간사에게

문자메시지 및 전화통화의 방법으로 협의하였고, 개최일시가 정해진 뒤에도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발송의 방법으로 일시·장소·안건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개특위 개최과정에서 국회법 제49조 제2항에 위반하여 간사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에 대한 표결은 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질의·토론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 또 이 사건 사개특위의 표결절차 전에는 안건 내용이 충분히 안내되었고 토론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질의·토론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친 이 사건 사개특위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 않고,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피청구인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 사건 정개특위 개최일시를 정하기 전 간사에게 문자메시지 및 전화통화의 방법으로 협의하였고, 개최일시가 정해진 뒤에도 문자메시지 및 팩스 발송의 방법으로 일시·장소·안건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개특위 개최과정에서 국회법 제49조 제2항에 위반하여 간사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거친 이 사건 정개특위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 않고,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만에 하나 피청구인들의 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취소·무효로 할 정도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청구인 및 피청구인

○ 청구인

1. 국회의원 나경원 외 113(2019헌라2)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주현

2. 국회의원 장제원 외 12(2019헌라3)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 김연호

변호사 김태훈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석동현)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구충서)

○ 피청구인

1. 국회의장(2019헌라2, 2019헌라3)
2.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2019헌라3)
3.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2019헌라3)

피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유한(바른) (담당변호사 최주영, 이수경)

[별지: 관련 조항]

국회법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위원장의 직무)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79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①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찬성자와 연서하여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포함한다)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動議)(이하 이 조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가결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을 제3항의 기간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 안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전단에 따라 지정된 안건(이하 "신속처리대상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대안을 입안한 경우 그 대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그 지정일, 제4항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제86조제1항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④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는 제외한다)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률안 및 국회규칙안이 아닌 안건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⑤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거나 제4항 본문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신속처리대상안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속처리대상안건이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⑧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0조(의안·동의의 철회) ① 의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動議)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2명 이상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에 대해서는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同意)를 받아야 한다.

보 도 자 료

국회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 활동기간 관련 권한쟁의 사건

[2019헌라5 국회의원과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공 개 변 론]

헌법재판소는 2020년 2월 14일 오후 4시 대심판정에서 2019헌라5 국회의원
과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변론
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①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2019. 8.
28. 해당 조정위원회에서 2019. 4. 30.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원안을 조정안으로 하여 가결을 선포한 행위 및 ②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19. 8. 29.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조정안을 정개특
위 심사 법률안으로 하여 가결을 선포한 행위에 대하여, 정개특위 안건조정
위원회의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이었던 장제원, 김재원 의원이 국회법상 90일
의 안건조정위원회 활동기간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률안 심의권의
침해 및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건이다.



2020. 2. 11.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사건개요

- 2019. 8. 26. 청구인 국회의원 장제원 외 자유한국당 정개특위 위원 7인은, 4. 30.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19985호)’을 포함한 4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하여 안전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였다.
- 피청구인 정개특위 위원장은 2019. 8. 27. 안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4건의 법안들을 조정위원회의 심사에 회부하였고, 같은 날 제370회 국회(임시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1차 안전조정위원회가 개최되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조정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 2019. 8. 28. 제2차 안전조정위원회가 개최되었고, 피청구인 정개특위 안전조정위원장은 조정대상인 4건의 법률안들 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안)’ 원안을 그대로 조정안으로 하는 표결을 실시하여 가결을 선포하였다.
- 2019. 8. 29. 피청구인 정개특위 위원장은 제370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안전조정위원회에서의 조정안대로 정개특위 심사 법률안의 가결을 선포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로 회부되었다.
- 2019. 8. 30. 청구인들은 피청구인들의 정개특위 안전조정위원회 및 전체회의에서의 각 가결선포행위에 대하여, 자신들의 법률안 심의권을 침해하여 무효임을 확인할 것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및 관련 조항

- (1) 피청구인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안전조정위원회 위원장이 2019. 8.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의원 심상정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19985호)’을 조정안으로 하는 의결을 가결 선포한 행위
- (2) 피청구인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19. 8. 29. (1)항의 조정안대로 위원회 의결을 가결 선포한 행위가
각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및 그 행위의 무효 여부

[관련 조항]

국회법 제57조의2(안전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이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제58조제1항에 따른 대체토론(大體討論)이 끝난 후 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조정위원회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그 심사를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②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그 구성일부터 90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간사와 합의하여 9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 ⑧ (생략)

⑨ 제85조의2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심사하는 조정위원회는 그 안건이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활동기한이 남았더라도 그 활동을 종료한다.

⑩ 조정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 안건조정위원회는 소위원회로서 헌법상 위원회로부터 유래한 준립근거가 있으며 위원회의 권한과 기능 중 일부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므로, 정개특위 안건 조정위원회 역시 독립적 국가기관으로서 피청구인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권한쟁의심판청구의 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 국회법 제57조의2 제2항의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간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고, 그 축소도 소속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런데 피청구인 조정위원장은 2019. 8. 28. 공직선거법 개정안(심상정 의원안)을 일방적으로 조정안으로 의결하도록 하여 이 사건 조정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국회법을 위반하였다. 이는 헌법상 의회주의와 위원회제도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부여된 법률안 심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무효이다.
- 피청구인 정개특위 위원장은 2019. 8. 29. 이 사건 조정위원회에서 위법·무효로 의결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심상정 의원안)을 정개특위 심사 법률안으로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권을 침해하였으며, 이러한 정개특위의 의결도 위법·무효이다.

▣ 피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안전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국회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으로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 조정위원장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
- 국회법 제57조의2는 안전조정위원회 활동기한의 상한만을 규정할 뿐, 하한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또한,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을 뿐, 반드시 기한을 정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 정개특위의 심의 경과를 보면,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조정안의 의결은 적법하고,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정개특위의 의결도 적법하다.

▣ 청구인 및 피청구인

○ 청구인

1. 국회의원 장제원
2. 국회의원 김재원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가우 (담당변호사 이경환)

변호사 황성현

○ 피청구인

1.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안전조정위원회 위원장
2.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

피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이영철)